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('21.2.23., 의결 제2021-95호)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 신설)
- 나. 적용대상 법령 및 우선순위를 정함(안 제2조 신설)
- 다.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,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(안 제3조, 별표 1 신설)
- 라.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(안 제4조, 별표 2 신설)
- 마. 매 3년 주기로 재검토 기한을 정함(안 제5조 신설)